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검 토 보 고

I . 회부경위

1. 의안번호 : 제1483호
2. 제 출 자 : 서울특별시교육감
3. 제출일자 : 2020. 5. 4.
4. 회부일자 : 2020. 5. 4.

II . 제안이유

- 코로나 19 사태로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농·축산물 생산자 및 학교 급식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학생 식재료 꾸러미 지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무상급식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고교 1학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고자 함.

III.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1. 편성규모

(단위: 백만원, %)

구 분		추경 예산편성액		기정예산액 (B)	증감내역	
		금액(A)	비율		금액(A-B)	비율
총 규 모		10,131,363	100.0	10,123,853	7,510	0.1
세 입	중앙정부이전수입	5,957,605	58.8	5,950,095	7,510	0.1
	자치단체이전수입	3,458,976	34.1	3,458,976	0	0.0
	기타이전수입	9,899	0.1	9,899	0	0.0
	자체수입	181,534	1.8	181,534	0	0.0
	지방교육채	0	0.0	0	0	-
	전년도이월금	523,349	5.2	523,349	0	0.0
세 출	인건비	6,070,501	59.9	6,070,501	0	0.0
	기관운영비	29,757	0.3	29,757	0	0.0
	학교운영비	901,800	8.9	901,800	0	0.0
	교육사업비	2,110,235	20.8	2,102,725	7,510	0.4
	시설사업비	895,183	8.9	895,183	0	0.0
	지방교육채 및 BTL	109,646	1.1	109,646	0	0.0
	예비비 및 기타	14,241	0.1	14,241	0	0.0

2. 세입예산

(단위: 백만원, %)

구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감내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합계	10,131,363	100.0	10,123,853	7,510	0.1	7,510	0		
중앙 정부 이전 수입	보통교부금	5,142,070	50.8	5,134,560	7,510	0.1	7,510	0	
	특별교부금	121,782	1.2	121,782	0	0.0	0	0	
	국고보조금	144,440	1.4	144,440	0	0.0	0	0	
	특별회계전입금	549,314	5.4	549,314	0	0.0	0	0	
	계	5,957,605	58.8	5,950,095	7,510	0.1	7,510	0	
자치 단체 이전 수입	법 정	시도세	1,400,083	13.8	1,400,083	0	0.0	0	0
		담배소비세	253,957	2.5	253,957	0	0.0	0	0
		지방교육세	1,644,977	16.2	1,644,977	0	0.0	0	0
		학교용지 부담금	13,822	0.1	13,822	0	0.0	0	0
		지방교육재정 교부금보전금	100,065	1.0	100,065	0	0.0	0	0
		교육급여보조금	8,660	0.1	8,660	0	0.0	0	0
		소계	3,421,564	33.7	3,421,564	0	0.0	0	0
	비 법 정	광역자치단체	37,412	0.4	37,412	0	0.0	0	0
		기초자치단체	0	0.0	0	0	-	0	0
		소계	37,412	0.4	37,412	0	0.0	0	0
	계	3,458,976	34.1	3,458,976	0	0.0	0	0	
	기타이전수입(기타지원금)		9,899	0.1	9,899	0	0.0	0	0
	자 체 수 입	교수학습활동수입	106,413	1.0	106,413	0	0.0	0	0
행정활동수입		5,321	0.1	5,321	0	0.0	0	0	
자산수입		15,262	0.2	15,262	0	0.0	0	0	
이자수입		7,101	0.1	7,101	0	0.0	0	0	
금융자산회수		22,010	0.2	22,010	0	0.0	0	0	
기타수입		25,427	0.2	25,427	0	0.0	0	0	
계		181,534	1.8	181,534	0	0.0	0	0	
지방교육채	0	0.0	0	0	-	0	0		
전년도이월금	523,349	5.2	523,349	0	0.0	0	0		

3. 세출예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제2회 추경안		기정예산	증 감 내 역				
		금액	비율		증감액	비율	일반재원	목적지정 (우선확정)	
합 계		10,131,363	100.0	10,123,853	7,510	0.1	7,510	0	
인 건 비	공 무 원 인 건 비	4,727,204	46.7	4,727,204	0	0.0	0	0	
	사 립 학 교 인 건 비	1,343,297	13.2	1,343,297	0	0.0	0	0	
	계	6,070,501	59.9	6,070,501	0	0.0	0	0	
경 상 비	기 관 운 영 비	29,757	0.3	29,757	0	0.0	0	0	
	학 교 운 영 비	901,800	8.9	901,800	0	0.0	0	0	
	계	931,557	9.2	931,557	0	0.0	0	0	
사 업 비	교 육 사 업	인 적 자 원 운 용	28,411	0.3	28,411	0	0.0	0	0
		교 수 학 습 활 동 지 원	508,342	5.0	508,342	0	0.0	0	0
		교 육 복 지 지 원	1,365,793	13.5	1,358,283	7,510	0.6	7,510	0
		보 건 / 급 식 / 체 육 활 동	71,516	0.7	71,516	0	0.0	0	0
		평 생 교 육	28,099	0.3	28,099	0	0.0	0	0
		직 업 교 육	812	0.0	812	0	0.0	0	0
		교 육 행 정 일 반	107,262	1.0	107,262	0	0.0	0	0
		소 계	2,110,235	20.8	2,102,725	7,510	0.4	7,510	0
	시 설 사 업 비	학 교 신 증 설	159,889	1.6	159,889	0	0.0	0	0
		일 반 시 설	645,260	6.4	645,260	0	0.0	0	0
급 식 시 설		90,034	0.9	90,034	0	0.0	0	0	
소 계		895,183	8.9	895,183	0	0.0	0	0	
계		3,005,418	29.7	2,997,908	7,510	0.3	7,510	0	
지방교육채및BTL상환		109,646	1.1	109,646	0	0.0	0	0	
예비비및기타		14,241	0.1	14,241	0	0.0	0	0	

IV. 검토 의견(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제안경위 및 주요내용

- 동 추가경정예산안은 2020년 5월 4일 서울특별시교육감에 의해 의안번호 제1483호로 제출되어 2020년 5월 4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고 함)’의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농·축산물 등의 생산자 및 학교급식업계의 어려움을 완화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2. 주요 검토의견

가. 총괄 검토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의 감염증 확산에 따른 개학연기로 학교급식이 중단된 상황에서 학교급식 식재료의 생산과 유통, 납품 등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피해를 완화하고자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금번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를 기정예산보다 75억 1천만원이 증가한 10조 1,313억 6천 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나. 세입예산에 대한 검토(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5)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예산안은 총 10조 1,313억 6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중 보통교부금을 75억 1천만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 동 재원은 국회에서 지난 3월 17일 의결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정부)」에 따른 것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

조에 따른 보통교부금 증액분 329억 4천 5백만원 중 일부를 반영한 것입니다.1)

[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종류별 교부 기준

종류와 자원		교부기준
보통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97% + 교육세 - 유아교육지원회계 전출분)		시·도교육청별로 총액을 교부하고 각 시·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인건비, 시설비 등에 사용하거나 학교회계로 전출
특별교부금 (내국세의 20.79%의 3%)	국가시책(60%)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으로 국가시책사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교육부장관이 결정
	지역현안(30%)	기준재정수요액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 발생 시 교부
	재난안전관리(10%)	재해로 인한 특별 재정수요 발생 시 교부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학교급식 중단으로 학교급식 관련 산업계가 큰 어려움에 봉착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으로2) 이미 확정 교부된 세입 증액분 중 일부만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이는 학교급식 예산편성의 시기적 시급성을 고려한 판단으로 금번 예산편성에 반영되지 않은 미반영 세입 증액분 254억 3천 5백만원의 경우에는 다음 추경예산시 세입편성에 반영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 2020회계연도 정부 추경 편성에 따른 보통교부금 추가 교부 알림(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2172, 2020.3.18.)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3조(교부금의 종류와 자원) ① 국가가 제1조의 목적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교부금(이하 "교부금"이라 한다)은 보통교부금과 특별교부금으로 나눈다.
 ② 교부금 재원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1. 해당 연도 내국세[목적세 및 종합부동산세, 담배에 부과하는 개별소비세 총액의 100분의 45 및 다른 법률에 따라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세목(稅目)의 해당 금액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 총액의 1만분의 2,079
 2. 해당 연도 「교육세법」에 따른 교육세 세입액 중 「유아교육지원특별회계법」 제5조제1항에서 정하는 금액을 제외한 금액
 ③ 보통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2호에 따른 금액에 같은 항 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97을 합한 금액으로 하고, 특별교부금 재원은 제2항제1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3으로 한다.
 ④ 국가는 지방교육재정상 부득이한 수요가 있는 경우에는 국가예산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부금 외에 따로 증액교부할 수 있다.

2) 매일경제, 당정 "농산물꾸러미 지원사업에 8개 지자체 참여...5월부터 공급", 2020.4.27.

다. 세출예산에 대한 검토(주요사업별 설명자료 pp13~15)

-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출예산은 10조 1,313억 6천 3백만원으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현재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등을 대상으로³⁾ 1인당 10만원씩 식재료 구입을 지원하고자 총 75억 1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현재 2020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무상급식 예산은 본예산 기준 3,972억 4천 9백만원이며, 올해 초 개학이 연기되고 학교급식이 중단됨에 따라 대부분의 예산이 미집행 상태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학생들의 자가급식으로 인한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 따라⁴⁾ 기 편성된 학교급식비를 농산물 꾸러미 구입비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그러나 당초 편성된 기정예산에 따르면 현재 무상급식에서 제외된 고등학교 1학년 등의 경우에는 부득이 무상급식비를 활용한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교육청이 금번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학생 가정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의 지원범위를 확대하려는 것은 학교급식 관련 산업의 피해 완화와 개학연기에 따른 가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좀 더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지속적인 교육복지 확대측면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3) 다만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코로나 위기 대응 식재료 지원’ 사업에는 고등학교 1학년 이외에 무상급식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는 서울체육중·고등학교, 여명학교, 국립전통예술중학교, 국립국악중학교 등 5개 학교 재학생에 대한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음.

4)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3463, 2020.4.29.

-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